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948
----------	------

발의연월일 : 2017. 3. 2.

발의자 : 임이자 · 장석춘 · 이양수  
신보라 · 강석호 · 원유철  
곽대훈 · 홍문종 · 문진국  
지상욱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2년마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 취급량·배출량, 배출량줄이기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 중 일정규모 이상의 자에게만 배출량조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되 환경부장관이 그 결과를 검증해 사업장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배출량줄이기계획을 제출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조사·관리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고 실효성을 제고시키려는 것임(제15조의2, 제32조제2항제4호·제5호 및 제6호 삭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삭제한다.

제32조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의2(특정수질유해물질의 관리 등) ① 「수질 및 수생태 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특정수질유해물질”이라 한다)의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 취급량·배출량, 배출량줄이기계획(이하 “배출량줄이기계획”이라 한다)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배출량줄이기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의 사유와 내용 등을 기재한 변경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배출량줄이기계획의 수립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2년마다 배출량줄이기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이행실적이 배출량줄이기계획에 미달한 경우에는</p>	<p style="text-align: center;"><u>&lt;삭 제&gt;</u></p>

그 배출량줄이기계획을 제출한  
자에게 그 계획을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⑤환경부장관은 관계 공무원으  
로 하여금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사용하거나 배출하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특정수질유해물  
질의 취급량과 배출량을 조사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  
입·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  
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  
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성명과 출입의 시간·목적 등을  
적은 서면을 관계인에게 내주  
어야 한다.

⑥환경부장관은 특정수질유해  
물질의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가 배출량줄이기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환경부장  
관에게 제출한 계획을 이행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와 제5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32조(과태료) ① (생 략)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32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p>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 -----.</p>
<p>1. ~ 3. (생 략)</p>	<p>1. ~ 3. (현행과 같음)</p>
<p><u>4.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배출</u></p>	<p><u>&lt;삭 제&gt;</u></p>
<p><u>량줄이기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u></p>	<p><u>&lt;삭 제&gt;</u></p>
<p><u>5.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u></p>	<p><u>&lt;삭 제&gt;</u></p>
<p><u>6.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u></p>	<p><u>&lt;삭 제&gt;</u></p>
<p>7. · 8. (생 략)</p>	<p>7. · 8. (현행과 같음)</p>
<p>③ (생 략)</p>	<p>③ (현행과 같음)</p>